

李朝末期에 있어서 韓獨經濟關係 (I)

金 光 洙*

I. 序 言

近世 世界史上 最大의 悲劇的인 主人公으로 登場하여 歷史의 흐름속에서 항상 주요한 問題를 提起하였고 또한 스스로 깊은 矛盾을 안고 있는 民族國家로서 獨逸을 지적할 수 있다. 독일은 普佛戰爭以後 비로소 統一된 國家를 形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이센은 統一된 獨逸聯邦國家를 組織하기 以前에 이미 極東地域에 使節艦隊를 편성 파견하여서 中國 日本 그리고 朝鮮國과 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였으며 이것은 西歐社會에서 比較的 뒤늦게 모습을 나타냈고 늦게 비로소 產業化過程에 들어섰던 獨逸國民으로서는 永遠히 자랑할만한 업적의 하나라고 主張된다.

關稅同盟이 成立하므로써 독일의 統一은 經濟的 方面으로부터 漸進的으로 이룩되기 시작하였으며 其後 10年 即 1843年에 프로이센議會는 처음으로 東洋方面에 대한 貿易開拓에 關한 建議案이 提出되었다. 이 內容은 Singapol에 첫 근거지를 設치하고 其後 中國으로 그리고 나아가 全極東으로 進出하려는 企劃이었다. 勿論 이러한 建議案이 提出되어지기 以前에 이미 여러 目的을 가지고 활짝 열리지 아니했던 極東의 諸門을 두드렸음은 否認할 수가 없다.

政治的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이 經濟的으로 무척 그 位置가 後進的이고 劣位에 있던 독일 民族에게 極東이 紹介되자 極東에 대한 그들의 進出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컸다. 이미 極東에 있어서 有利한 地位를 확보하고 있었던 諸國과 그 民族을 相對로 하면서 스스로를 키우고 그리고 競爭하여야 했던 勇氣와 의욕을 가지고 開拓者의 精神으로 임하였던 독일국민 中の 몇은 朝鮮의 近代化와 門戶開放에 있어서 絶對적인 作用을 하였음을 지적한다.

滯獨期間中 우연히 入手된 Ernst Opert의 저서 *A forbidden Land*를 읽으면서 그 內容中

* 法經大學 經濟學科 副教授

分明히 하여야 할 몇가지 事實을 發見하였고 또 仁川에 가장 일찍 商店을 차리고 企業을 經營하였던 獨商人의 후손으로 Bonn 大學校 附設 極東文化 및 言語研究所의 所長과 Bonn 大學校 日本語科 主任교수 등을 歷任한 Zachert 博士와 가까이 사귄 수 있는 機會를 가졌고 또 그를 通하여 入手된 새로운 事實 등을 언젠가는 꼭 밝히어야겠다는 責任感을 안고있었다. 다행히 美國 하버드大學校의 燕京學會로부터 研究의 支援을 받게되어 이 研究에 착수케 되었다.

이 研究는 크게 二部分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本題를 分析하기위한 前作業으로 독일의 統一, 對極東使節과 對 計劃, 朝鮮의 開港을 둘러싼 움직임을 간단히 紹介하고 둘째部分에서는 朝鮮의 開化過程에 있어서 크게 기여했거나 問題를 隨伴했던 독일인을 깊이 分析하고자 한다. 먼저 朝鮮近代化過程에서 가장 뚜렷한 功果를 남긴 魏廉돌프에 대하여 說明하고 이어 Opert의 朝鮮訪問과 進入經路에 대한 分析에 努力했고 끝으로 Zachert 家가 港都 仁川에서 行한 활동과 朝鮮交易史에 끼친 影響을 紹介키로 한다. 이 分野에 關한 充分한 資料를 入手할 수 없다는 事實은 무척 研究를 어렵게 하고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分野에 關한 研究, 檢討는 계속 強行되어야 한다고 본다.

II. 프로이센의 獨逸統一과 第1回 對 極東使節 派遣計劃

1. 關稅同盟과 독일의 統一

歐洲大陸의 經濟的 大國에로의 독일의 急速한 成長 發展은 一般的으로 독일帝國의 創建에 依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主張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全體적으로 보아 이것은 正當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독일이 統一하여 帝國을 創建하기 以前에 있어서는 貧弱한 一農業國이었으며 經濟的 發展에 있어서 他西歐의 諸國家에 比하여 훨씬 뒤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Gustav Stolper 교수는 1870年代 以前에 이미 유럽工業化의 中心이 라인江의 西方에 位置했었다고 主張하였으며^① 經濟史學者 J. H. Clapham^② E. J. Passant^③ A. Birnie^④ H. Bechtel^⑤ 그리고 F. Lütge^⑥教授 等の 意見도 같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19世紀初葉에 있어서 독일은 數多한 小主權國으로 分割되었다는 것과 이 國家間에 相互 關稅를 부과하여야만 했었다는 事實이 産業이 發達을 妨害하고 있었음을 認知하여야만 한다.

註 ① vgl., Gustav Stolper, Deutsche Wirtschaft Seit 1870, Aufl., 2, Tübingen, 1966

② vgl., J.H. Clapham, Economic Development of France & Germany 1815~1914, Aufl., 4, Cambridge, 1963, S. 278

③ vgl., E. J. Passant, A short history of Germany 1815~1945, Cambridge, 1962, S. 99~100

④ vgl., A. Birnie, An economic history of europa, 1760~1939, London, 1964, S. 271

⑤ vgl., H. Bechtel, Wirtschaftsgeschichte Deutschland, München, 1956, S. 272

⑥ vgl., Lütge, Deutsche Sozial-und Wirtschaftsgeschichte, Aufl., 2, Berlin, Göttingen & Heidelberg, 1960

1806年 Napoleon 1世가 Rhein 聯邦을 組織하자 독일內의 諸侯伯은 이 聯邦에 參加하므로서 그 數가 37個國에 이르렀다. 聯邦에 加入치 아니하였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中 프로이센은 Napoleon 打倒를 至上目標로 設定하고 充實히 國力の 增強을 企圖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프로이센의 念願은 1813年 라이프찌히에서 나포레온軍을 英露聯合軍과 더불어 격파하므로서 그 첫 과정을 이룩하였다고 본다. 나포레온의 沒落後 뷔엔나烈國會議의 結果 프로이센은 以前보다 廣大한 國土를 領有케 되었고 독일內의 여러 작은 諸侯伯國은 Deutscher Bund 를 結成케 되었다.^⑦

1816년에 組織되어진 독일聯邦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를 비롯하여 35個國의 君主國과 Lübeck, Hamburg, Bremen 및 Frankfurt 의 4自由市에 依하여 形成되었다. 39의 小領國으로 分割되어 있었기 때문에 當時의 독일經濟는 統一的인 國內市場의 形成에는 아직 먼 狀況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독일人은 마치 죄수가 감방의 창살박힌 창문을 통하여 行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去來를 營위하고 있었다고^⑧ 한 外國人에 依하여 조소되었지만 이 감방의 창살에 해당하는 것이 번잡이 극하였던 國內關稅라는 存在이었다. 諸小主權國家들은 各自 獨自的인 關稅組織을 가지고 있었으며 其中에서도 比較的 高率關稅制度를 採擇하고 있었고 또한 主導的인 立場을 取하고 있었던 프로이센이 출신하여 1818년에 새로운 關稅法과 關稅率을 採擇하였다. 프로이센은 內國關稅를 철폐하고 輸入關稅率을 輕減하므로서 自由貿易에로의 움직임을 強化시켰던 것이다.^⑨

1828년에 關稅同盟에도 第1段階를 맞이했다. 南獨의 Byern 과 Wüttemberg 가 프로이센의 關稅同盟에 對抗하여 共通의 關稅率을 採用하고 南獨關稅同盟을 結成했다.^⑩ 그리고 全獨의 關稅統一에 依하여 外國市場을 상실할 것이 두렵던 英國에 依하여 支持를 받은 Hannover Sachsen, Kur-Hessen, Braunschweig, Thüringen 諸邦 Frankfurt/M 그리고 Bremen 等の 中部諸邦도 結集하여^⑪ 독일은 3個의 關稅地域으로 並立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자 프로이센은 적극적으로 南獨關稅同盟에 接近하였고 1829년에는 南獨關稅同盟과 通商條約을 체결하는데 成功했다. 1834년에는 프로이센을 盟主로하여 독일諸邦 18個國이 독일關稅同盟(Der Deutscher Zollverein)을 結成하므로 8253 Meilen² 人口 2,500萬名을 함유하는 強力한 關稅장벽에 둘러싸인 經濟圈을 形成케 됐다.^⑫

그리고 이 關稅同盟은 점차 擴大하여 1852년에는 거의 大部分의 독일國家에 波及되었고 其

註 ⑦ vgl., Crane Brinton, John B. Christopher, Robert Lee, A History of Civilization, 2nd. ed., Englewood Cliffs, N.J., 1960, 梁秉祐, 閔錫泓, 李普荊, 金聲近 共譯, 世界文化史, 中, 서울, 1963, S. 556~561

⑧ vgl., 大塚久雄編, 西洋經濟史, 東京, 1968, S. 197

⑨ vgl., Theodor Plaut, Deutsche Handelspolitik, Aufl., 2, Leipzig & Berlin, 1929, S. 76~77

⑩ & ⑪ vgl., Friedrich Lütge, Deutsche Sozial-und Wirtschaftsgeschichte, Aufl., 2, Berlin, Göttingen & Heidelberg, 1960, S. 415

⑫ vgl., a.a. O., S. 416

間에 독일商業에 對한 많은 內部的 制限을 철폐하는 政策이 착착 進行되던 것이다. 1862年 9月 Otto von Bismarck의 任命을 契機로 독일統一이라는 課題를 向하여 매진하는 強硬政策을 採用했다. 1867년에는 北獨同盟과 南獨諸國과의 條約에 依하여 新關稅同盟이 成立하므로 그 加入者의 範圍도 한층 더 擴大되어 보다 有效 有力한 것으로 發展했다. 비스말크의 鐵血政策은 1864년에 있어서 對 丁抹, 1866년의 對 오스트리아, 그리고 1870년의 對佛戰爭을 惹起시켰으며 이 3戰爭에 있어서의 프로이센의 勝利는 1871年 1月 18日 프로이센王 Wilhelm 1世를 독일황제로 하고 독일은 聯邦의帝國을 건설하기에 이르렀으며 프로이센王이 거의 聯邦政府의 實權을 장악하게 되었다.

2. 使節團의 파견

關稅同盟이 成立되므로서 독일은 經濟的 側面으로 부터 漸次 統一이 이룩되기 始作했다. 其後 10年 即 1843년에 프로이센議會는 처음으로 東洋方面에 對한 貿易開拓에 關한 建議案이 提出되어졌으며 그 內容은 먼저 Singapol에 근거지를 設置하고 對 中國貿易을 開始하기 위한 準備를 갖춘후 中國과의 通商條約을 체결하고 이어 계속하여 極東의 諸國으로 進出하려는 것이었다.^⑬ 勿論 그렇다고 해서 이 以前에 독일人들이 極東을 全혀 訪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1600年代에 이미 宗教的인 目的으로 中國을 訪門하였으며 18世紀初에는 이미 對 東洋貿易을 目的으로한 商社가 組織되어졌고 또 直接 商交易이 行하여졌음을 알 수가 있다. 1842년에 中英兩國間에 소위 南京條約이 체결되고 이를 通하여 英國이 莫大한 利益을 획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開港場에 있어서 個人交易의 自由가 保障되고 Hong Kong을 英國에 割讓했다는 事情이 歐州諸國에 알려지자 各國은 競爭하여 中國에 對한 關心을 갖게 되었고 이와같은 事情이 프로이센에도 자극을 주어 使節派遣에 關한 움직임이 싹트게 되었던 것이다. 1843년에 프로이센政府에 提出되어진 함대파견에 關한 建議案은 其後 잠시 國內事情에 依하여 放任되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프로이센政府는 이 建議案의 趣旨에 따라 한자同盟都市의 도움을 얻은후 1859年 8月 9日 使節의 任命과 隨行할 專門家의 人選 或은 파견함대의 편성 및 贈與할 物品의 구입 등을 위한 예산案을 可決하였던 것이다.^⑭ 使節團長으로는 公使館 參事官 兼 Warschau 總領事 Friedrich Albrecht Graf zu Eulenburg가 任命되었으며 Dampfkorvette Arcona를 비롯하여 4隻의 함정과 740名의 乘員으로 所謂 Eulenburg-Mission은 편성되어졌던 것이다.^⑮

1859年 10月 25日 Thetis號와 Frauenlob號가 Danzig港을 出發한후 近 1年後인 1860年 9月 4日 使節團長 Eulenburg가 乘船하고 있었던 Arcona號가 江戶灣에 入港하였으며 入港하자 駐

註 ⑬ vgl., 丸山國雄, 日獨交涉史話, 東京, 1941, S. 2~7

⑭ vgl., a.a.O., S. 26~28

⑮ vgl., a.a.O., S. 29~31

日 프랑스代理公使 Duchesne de Bellecourt 와 駐日 美合衆國辨理公使 Townsend Harris 의 도움을 받아 對 日本通商條約協商을 위한 作業이 始作되었던 것이다. 1860年 12月 13日 日本幕府는 外國奉行 掘織部正利熙 竹本圖書正雅 等を 代表交涉委員으로 任命하여 協상에 임하게 하였으나 一時 독일聯邦의 國號稱概念의 해석을 中心한 問題로 會談이 停頓되어졌었으나 해결되어 1861年 1月 24日에 兩國間에 修好通商條約 및 貿易章程이 체결되었다. 日本幕府와 近 5個月間의 교섭 끝에 條約의 假調印에 成功할 수 있었던 Eulenburg-Mission 은 1月 31日 江戸를 떠나 長崎에 一時 寄港하였다가 上海로 向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中國과의 通商條約의 체결에 成功하고 귀국했던 것이다. 其後 1868年에 다시 協議가 始作되어 1869年 2月 20日에 독일北部聯邦과의 修好通商航海條約을 成立하고 이 條約은 同年 9月 9日 批准되어 同月 11日에 東京에서 批准書가 교환되었다. 독일과 韓國과의 通商協商은 1870年 駐日독일公使 Max von Brandt 의 訪韓으로부터 正式 始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독일사람에 의하여 行하여진 對 朝鮮商交易교섭의 첫번째는 決코 아니었다.

Ⅲ. 開港을 위한 諸國家의 接近

1. 開港期의 國內事情

19世紀에 접어들면서 朝鮮王朝는 王室의 衰微하여짐과 이에 反하여 兩班戚族들이 中心이 되어 國政의 紊亂함이 견잡을 수 없었고 또한 社會的 不安과 經濟的인 困難 破綻이 갈수록 尤甚케 되고 말았다. 이러한 때에 西歐의 先進 資本主義國家가 朝鮮의 宗主國이라 인식되어졌던 淸國을 翫슬게 되자 오랫동안 鎖國主義政策을 固守하여 오던 朝鮮은 이러한 國際的인 激動에 대응할 能力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크게 當황하고 그리고 어려운 立場에 처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朝鮮은 儒敎的인 事大思想의 弊害와 兩班階級을 中心으로한 四色朋黨의 爭鬪가 가져온 政治的인 罪過 그리고 壬辰 丙子의 兩大 國難에서 받았던 打擊과 世道政治의 腐敗 不正 衛前 土豪 等の 跋扈 行悖으로 궁핍함과 절망속에 있어야만 했던 國民의 痛요 崩기 등을 이선근교수는 王朝가 衰微해졌던 原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⁶⁾

특히 16世紀末葉以來 치르어야만 했던 兩次に 걸친 外侵以後 國力이 疲弊하여지고 士氣도 萎縮되어 進就의 氣象을 상실케 되므로 근신 守護의 對外政策을 加一層 堅持케 되었다. 過去에 行하여졌던 依例的인 使節의 왕래나 若干의 互市交易만이 인정되어졌을 뿐 새로운 國際交涉을 기피하고 스스로 鎖國主義를 固守하여야만 했다. 그리고 國民에게 對하여 無斷越境을 國法으로 禁止시켰을 뿐만 아니라 國內事情을 若干이라도 外國人에게 알리면 重하게 處罰까지

註 16) vgl., Hrsg., Ostasiatischer Verein Hamburg-Bremen, Gedankenschriften Zum 60 Jährigen Jubiläum, Hamburg, 1960, S. 64

17) 李瑄根, 韓國史, 最近世篇, 9版, 서울, 1971, S. 2~3

하였다. ⑧ 外國人에게 The Hermit Nation 또는 The Forbidden Land 로 호칭되어진 것이 當然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黃嗣永의 帝書事件以後 프랑스함선을 비롯한 外國船舶의 出沒에 關하여 어느 程度 消息을 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對하여 擔當한 警戒과 關心을 기울이고 있었던 朝鮮王朝는 阿片戰爭에 이어 英佛聯合軍에 依하여 北京이 强占되었다는 事實이 傳聞되자 소위 洋夷侵犯을 上下中外에서 모두 엄료케 되었다. 그리하여 朝野가 서둘러 그 實情을 파악하고자 趙徽林一行의 熱河門安使를 파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먼저 파견되었던 冬至使 申錫愚一行이 門安使의 귀국에 앞서 되돌아와서 올린 報告⑨와 함께 여러가지 所聞이 전파되어 人心은 甚한 충격을 받았고 社會는 一大 혼란상태를 야기케 되었다. 그러하다가 門安使 趙徽林一行의 귀국보고를 通하여 어느 정도 진정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哲宗末葉의 國內정세는 이미 쇠미와 혼란의 극에 達하여서 누구나 이 난국을 擔當하고 그리고 쉽게 頹勢를 挽回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단계에 直面하고 있었다.

1863年末에 哲宗이 後嗣없이 逝去하자 高宗이 即位하게 되었다. 그러나 國王이 年幼함을 理由로 그의 生父 興宣大院君이 國政 全般의 實權을 委任받아 果敢한 政事를 집행케 되었다. 當時의 朝野는 國際情勢에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그의 果敢 猛斷 그리고 獨裁의인 天性은 오히려 對外問題의 處理에 있어서 많은 좋지못한 結果를 自招할 수 밖에 없었다. 급변하는 世界大勢를 明白히 파악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積極적인 外交政策을 採擇하여야 했음에 反하여 東侵하려는 歐美 資本主義烈強의 政策에 抗爭 拒否코자 철저한 鎖國政策을 強力히 수행하였음이 開港前의 朝鮮의 實情이었다.

2. 烈強의 接近

非正常的인 手段과 方法으로 通商을 要請하였던 유대系 獨逸人 Ernst Opert 는 그의 訪韓記인 A Forbidden Land⑩에서 半島는 數世紀동안 掠奪慾에 불타는 인접 국민들에 依한 陰謀와 侵略戰爭을 이미 겪고나서 이 諸族들 間의 싸움터가 되었고 이러한 原因으로 말미암아 모든 外部세력에서 隔離되도록 애써왔다고 기록하므로써 李王朝가 鎖國政策을 採擇했던 理由를 說明하고 있다. 自強 進取할 수 있었던 機會를 스스로 상실키로 원했던 東方의 隱遁國을 歐美 資本主義 諸國家와 極東의 新興帝國은 조용히 冬眠하도록 노아두지를 아니했다. 19世紀에 들어와서부터 雲揚號事件이 일어날 때까지 朝鮮을 訪問하여 直接 또는 間接적으로 正常的 또는 非正常的으로 通商 또는 開放을 要求했던 일은 數十회에 達한다. 其例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816年 英軍艦 Alseste lyra 號 忠淸 馬梁嶺下에 來泊

註 ⑧ vgl., 朝鮮總督府 中樞院版 校註 大典會通, 卷五『刑典中 禁制.

⑨ vgl., 哲宗實錄, 卷十三, 哲宗 12年 3月 27日 乙卯.

⑩ vgl., Ernst Opert, A forbidden Land, London, 1890

- 1832年 英商船 Amherst 號 몽금포 앞바다에 來泊 通商을 求함
- 1840年 英國船 2隻 濟州 加波島에 來泊 畜牛를 劫掠 退去함
- 1845年 英國軍艦 Samarang 號 濟州島 및 全羅 西南 沿岸을 1個月間에 걸쳐 測量 廻航함
- 1846年 佛軍艦 Ceule 等 3隻 忠淸 外長古島에 來到 致書함
- 1847年 佛軍艦 2隻이 古群山島 海岸에 나타남
- 1850年 異樣船 1隻 울진海岸에 來到함
- 1851年 佛國船 濟州島에 來到함
- 1852年 佛國船 古群山島 海岸에 나타남
美國捕鯨船 龍塘浦 앞바다에 漂到함
- 1854年 露船 威鏡道 德源 永興海岸에 來到 浦民을 殺傷함
- 1856年 佛軍艦 1隻 忠淸道 外長古島 앞바다에 來到 牛畜을 약탈함
- 1859年 英國船 東萊 龍塘浦에 漂到함
- 1859年 英國船 2隻 東萊 新草梁에 來到함
- 1860年 英國船 全羅道 楸子島와 東萊에 漂到함
- 1866年 英船 로나號에 Opert 同乘하여와서 通商을 要求함
- 1866年 美國船 Surprise 號 平安道 鐵山府에 漂到함
- 1866年 美國船 General Sherman 號 大同江을 溯上하여 平壤軍民에게 소각당함
- 1866年 佛國船 來侵 漢江을 溯航 楊花津에 이름
- 1866年 佛船 再次 來侵 江華島를 强占함 (丙寅洋掠)
- 1868年 美國軍艦 Senandoah 號 來航함
- 1868年 Opert 牙山灣에 上陸 退去함
- 1870年 독일군함 Hertha 號 釜山에 來航 通商을 要求함
- 1871年 美國 아세아함대 來航하여 通商을 要求함
- 1871年 美國軍艦 美兵 江華를 攻擊 廣城鎮을 强占 (신미양요)
- 1871年 프로이센船 1隻 白翎鎮에 漂到함
- 1875年 日本군함 雲揚號 來津함
- 1876年 韓日修好通商條規 調印함
- 1875年 日本군함 雲揚號事件이 發生했다. 日本史學者 旗田 魏氏는 侵韓의 機會를 마련하려는 日本이 計劃的으로 일으킨 事件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㉔ 이것을 契機로 하여서 日本은 江華談判을 通하여 開港과 通商修好를 强要하기에 이르렀고 其 結果 1876年에 韓日修好條約

註 ㉔) vgl., 旗田魏, 朝鮮史, 東京.

이 체결케 되었다. 條約의 체결후 使節의 往來가 빈번하게 되자 李王朝上下의 歐美 諸國에 對한 識見이 넓어졌고 이에 比例하여 점차 그 態度도 변하게 되었다. 閉鎖된 李王朝의 門을 열기 위하여 먼저 若干의 희생이라도 하였던 것은 프랑스였으며 이어서 美合衆國이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先手를 極東의 新興國 日本에게 빼앗겨야만 했고 韓日修好條約이 체결된후 5, 6年乃至 10年이나 뒤져서 美合衆國을 先頭로 하여서 비로소 西歐 諸國이 朝鮮王國과 修好通商條約을 체결케 되었던 것이다.

독일은 1870年 5월에 駐日독일代理公使 von Brand가 Hertha 號로 釜山에 來航하여 修好通商을 교섭코자한 것이 最初의 正式 접촉이었다고 할 수 있다.^㉔ 그러나 成功치 못하다가 淸國으로 轉勤된 브란트 독일公使는 韓美 韓英교섭이 成功한 後 北洋衙門의 署理直隸總督 張樹聲을 찾아 紹介文書를 받아가지고 1882年 軍艦으로 仁川에 來到하여 淸國道員 馬建忠의 斡旋으로 朝鮮政府와 교섭 絶충하여 5月 15일에 韓獨修好通商條規에 調印하였다. 브란트公使는 批准交換이 지연될 것을 豫見하고 別途로 萬一 批准交換以前에 독일商人이 來朝하면 他國 商人과 同等하게 貿易行爲를 許容해주기를 要請하였으며 그것을 인정받았다.^㉕

IV. 韓獨通商條約의 체결과 關稅問題

1. 通商 및 關稅條規 協定

1879년에 朝鮮政府는 軍事的인 威脅下에 日本과 不平等한 修好 通商條約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協定을 통하여 日本에게 一方의인 利益을 양여했던 것이다. 뒤 이어서 歐美의 資本主義 國家들과도 修好通商條約을 체결케 되어 드디어 門戶를 世界列強에 開放하게 되었음을 前述하였다. 韓獨 兩國間의 通商修好의 條約체결은 1883年 10月 27日 當時의 독일全權大臣은 駐日橫濱總領事 Eduard Zappe와 朝鮮國 全權大臣은 外務大臣이었던 閔泳穆이었다. 條約이 체결된후 副領事 Budler가 最初의 駐朝鮮 [독일外交官으로 赴任케 되었다. 朝鮮王國에는 日本과 修好條約이 체결되어질 때까지도 近代的인 關稅組織 機構 그리고 制度도 存在치 아니하였다. 그 첫째 理由는 朝鮮王國과 中國 및 日本과의 制限된 商人에 依한 制限된 場所 時日 그리고 商品에 對한 交易이나 朝貢貿易만이 行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必要性을 크게 인식치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李王朝는 關稅制度의 導入이나 關稅率의 策定을 위한 努力을 하지아니했던 것이다.

1876年 8月 24일에 체결된 條約中 11款으로 이룩된 韓日修好條規附錄과 日本人貿易規則10則을 참조하면 當時의 朝鮮王國은 얼마나 貿易이나 關稅問題에 關하여 깊은 知識을 갖고 있지 못하였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다. 其 一例로 第7則의 港稅를 보면 日本政府의 諸船舶에 對한

註 ㉔ Griffs, *Corea the Hermit Nation*, S. 405

㉕ vgl., 金允植, 陰晴史, 下, 165~166, 壬午 5月 23日 記事中 德使照會 및 大副官答照會.

稅를 免除한다고 規定하고 다시 調印하던 日字의 日本國 理事官 宮本小一의 照會에 回答하는 講修官 趙寅熙의 公翰에서는 商品의 輸出인에 對하여도 數年間 關稅를 免케 함을 特許한다고 하므로서 선박의 港灣稅는 勿論이요, 輸出入 商品에 對한 關稅까지도 免除한다고 公約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㉔ 韓日間의 교섭에 임하는 日本側 代表에 對하여 내린 訓令에서 朝鮮側이 輸入商品에 對하여 從價 5%의 關稅부과를 要求할 때 이를 受諾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에도 朝鮮側에서는 全혀 이 問題에 言及하지 아니하다가 前述한 바와 같이 日本側 宮本小一의 照會에 對하여 輸出入稅의 免除를 승락하였으며 뒤에 所謂 貿易規則을 協定할 때부터 外交 關稅 交易等에 關하여 充分한 知識을 갖고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韓日協定 체결時 關稅免除를 허락하였음을 알고 豆毛鎭에 稅關을 設置하고 輸出入稅를 부과키로 하였으나 日本側의 武力 示威에 依하여 實施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結局은 朝鮮이 歐美 資本主義 諸國家와의 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는데 不利한 關稅協定을 甘受하여야할 근거가 되고 말았다. 日本에 이어서 朝鮮과 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한 國家는 美合衆國이다. 韓美條約을 기안할 때 李鴻章의 草案 駐日 淸國公使館員 黃遵憲의 草案 朝鮮機務衙門 參謀官 李東仁의 草案 그리고 日本條規 謄本을 참작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으며 韓美修好通商條約文을 韓英條約에서 그리고 韓獨間의 條約은 韓英條約을 참고로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㉕

2. 稅關의 設置와 關稅率의 決定

1882年 5月 22日 濟物浦에서 全文14項의 英漢文 各 3本으로 作成된 韓美條約에 兩國 全權이 即 朝鮮側은 全權大官 經理統理機務衙門事 申禮과 全權副官 經理統理機務衙門事 金弘集이 美合衆國側은 全權大臣 水兵總兵 Robert W. Shufeldt 提督이 調印하고 다음과 같이 關稅問題에 對하여 協定하였다. 即 相互最惠國待遇를 인정하였으며 萬一 朝鮮商人이 美合衆國으로 商品을 輸出하거나 美國으로부터 輸入할 경우에는 美合衆國의 關稅法에 依하여 關稅와 其他 諸費用을 支拂하도록 하였고 美國商人이 朝鮮에 와서 交易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關稅率을 보면 日用品의 수입에 對하여는 從價稅 10%로 그리고 奢侈品으로 洋酒 담배 그리고 時計같은 종류에는 從價稅 30%로 策定하였으며 한국商品의 輸出關稅는 從價稅 5%以下로 決定했다. 萬一 美國商船이 朝鮮港口로 入航할 때는 每噸當 銀五錢을 支拂하여야 했다. 1883年 11月 26日 韓獨兩國은 通商修好 및 航海協定을 체결하였는데 이 條約에 依한 關稅率은 朝鮮을 위하여서는 不利했다. 朝鮮王朝은 關稅업무를 中國政府에게 委任하였고 이것은 다시 外國人에 依하여 집행 및 감독되어졌다. 即 中國政府는 독일人 P. G. von Möllendorf를 추천하여 그는 朝鮮王朝의 外衙門協辦으로서 비밀裡에 교섭하여 日本 國立第一銀行의 仁川 元山 釜山支店에게 朝鮮各港口의 關稅업무를 委託하도록 9條項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註 ㉔ vgl., 日本外交文書, 第9卷, S. 283~287. 文書番號92(附記 3)

㉕ 李瑄根, a.a.O., S. 759

1891년까지 朝鮮은 仁川 元山 그리고 釜山의 3港을 外國人에게 무역을 위하여 開放하였고 이 港口의 關稅업무는 다음과 같은 外國人에 依하여 1890年代에 있어서 經營되어졌다.

仁川稅關 J. C. Johnston

釜山稅關 J. H. Hunt

元山稅關 J. F. Olesen

關稅率은 一般的으로 相對國家의 利益을 위하여 의논 決定되어진다. 그러나 朝鮮側은 自國의 利益을 위하여 決定한 關稅率이 없다고 主張되어진다. 朝鮮王朝와 通商條約을 체결한 交

表 I.

關稅率

商 品 名			從 價 關 稅 率		
			日 本	獨 逸	有 効 率
수	입				
	소	금	8%	7.5%	7.5%
		茶	—	20	8
	설	탕	8	7.5	7.5
	백	주	10	10	10
	가	죽, 가 죽 제 품	10	7.5	7.5
		털	8	7.5	7.5
	인	삼	—	20	5
	기	름, 식	5	5	5
	물	유	—	7.5	7.5
	아	니 린 염	8	—	7.5
	원		8	5	5
	면		8	—	5
	면	제	—	7.5	7.5
	내	의	8	—	7.5
	종	이	—	5	5
	기		8	7.5	7.5
	작	업 도	—	7.5	7.5
	시	멘	5	7.5	5
	성		5	5	5
	담	배	—	20	20
수	출				
	금	은	면 세	—	면 세
	금		—	면 세	면 세
	초		면 세	면 세	면 세
	견		—	면 세	면 세
	여	행	면 세	면 세	면 세
	위에 지적되지 아니한 전	국산물품	—	5	5

易相對國은 대개가 朝鮮보다 強大하였고 그들은 協定에 있어서 關稅條件을 自己의 利益에 따라 協定하였기 때문에 商品에 따라 關稅率이 一定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全協定체결國 即 日本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및 英國 等에게 最惠國대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同一商品에 對하여 有効한 關稅率은 이 諸國家를 위하여 가장 有益한 것이었다. 圖表 I은 一部 商品에 對한 對日 對獨關稅率과 結局 有効한 關稅率을 比較한 것이다. ⑥

V. 開化過程에 있어서 기여한 독일人

1. Paul Georg von Möllendorff, 1847~1901

독일인 뮐렌돌프가 朝鮮땅에 到着한 것은 1882年末의 일로서 그는 朝鮮政府의 公式的인 招請을 받아서 來朝하여 朝鮮땅에 公的으로 居住할 것이 허가되었던 最初의 西歐人이었다. 開港 修交와 同時에 이에 따르는 外交上 그리고 國際貿易에 關한 知識의 結晶은 朝鮮으로 하여금 不合理한 損失과 대우를 甘受하여야만 했다.

1880年 9月 朝鮮齊奏官으로 北京에 갔던 卞元圭는 天津에서 李鴻章으로부터 國際情勢와 開國에 關한 실제적이면서도 具體的인 의견을 듣고 왔으며 다음해 冬至使를 따라서 中國에 파견되었던 朝鮮國王委員 李容肅도 역시 李鴻章을 天津에서 만나서 상의하는 가운데 그가 稅則 稅額 稅關組織과 構成 等에 關한 資料 얻기를 청하였던바 李鴻章은 回答으로서 西洋人을 고용할 것을 권고했던 것이며 ⑦ 其外에도 海關道臺 周馥과 天津의 機器局의 南局會辦 徐健寅은 各 各 金允植에게 西歐에 關한 情況에 精通하고 또 西洋言語에 能한 人을 選擇하여 雇聘할 것을 중용하고 있다. 그러나 國際交涉에 精通한 外國人을 초빙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욱 촉박하게 추진되어진 것은 壬午軍亂以後에 淸으로 파견된 朝鮮使節에 의하여서이다.

即 軍亂의 처리에 關한 感謝의 뜻과 大院君의 早速한 還國을 奏請하는 名目的인 謝恩 兼 陳奏使로 訪淸한 趙寧夏가 李鴻章을 만나서 高宗의 善後六條를 呈請하였는바 이 六條中 하나가 「擴商務」條인바 여기서 그리고 同年 9月에 高宗은 趙寧夏를 通하여 또 다시 李鴻章에게 咨文을 보내어서 賢明하고 鍊達한 人士를 薦거하여 朝鮮으로 보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와 같은 經路를 通하여서 北洋衙門에 의하여 선정되어 朝鮮으로 보내어져 근무케 된 洋人이 Paul Georg von Möllendorff(中國名 穆麟德)이다.

뮐렌돌프는 독일의 Halle 大學에서 法學 言語學 그리고 東洋語를 工夫하였으며 淸國에서는 독일外交館의 職員으로서 外交界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그가 朝鮮으로 雇聘되어질 때는 當年 35歲의 의욕이 강하였던 野心있는 前途가 期待되었던 靑年이었다. 그는 1869年 22歲時 淸國으

註 ⑥ vgl., Kwang-Soo Kim, Der Außenhandel Japans und Korea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utschlands, 1890~1914, Heidelberg, 1968, S. 138

⑦ vgl., 高柄翊, 穆麟德의 雇聘과 그 背景, 震檀學報, 第25, 6, 7合併號, 서울, 1964, S. 228

로 건너왔으며 初期에는 上海稅關에서 事務를 보면서 中國語를 工夫하였다. 其後 漢口 九江 等地的 稅關에서 근무하다가 1874年 5월에 辭任하고 北京駐在獨逸公館에 通譯으로 근무케 됨으로써 外交界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1876年以後 正式 通譯官 副領使 등으로 天津 上海領事館 總領事館에서 근무하였으나 그 職責에 만족할 수 없었고 또 좋은 信任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天津에 있는 동안에 李鴻章 周馥 등과 가까이 할 수 있는 機會와 그들의 권유로 中國衙門에 일자리를 求할 수 있다는 可能性에 接하자 1882년 7月初에 上海領事館에서 辭職하고 天津으로 옮겼던 것이다. ④
 뮐렌돌프가 朝鮮에서 必要로 하였던 人物로 雇聘되는 데에는 馬建忠 그리고 天津稅關의 稅務司로 있었던 獨人 Gustav Detring의 推薦이 있었다고 본다. 뮐렌돌프가 선발되어진 것은 壬午軍亂以後의 朝鮮政情下에서 日本의 要挾을 막으면서 朝鮮의 開港과 開國過程에서 야기되는 복잡한 諸事件에 對處케 하는데 그의 도움을 얻으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뮐렌돌프의 人品과 能力에 關한 周馥의 回答文書에 의하면 그는 各國의 法律에 關하여 넓은 識見을 가지고 있으며 同時에 英語, 佛語 그리고 中國語에 關하여서도 能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特히 그의 中國語에 關한 能力은 歐文을 漢文으로 번역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稅關業務에 이미 종사하여 많은 經驗과 馬建忠이 朝鮮으로 나아가서 美國 英國 그리고 獨國과의 諸條約 체결時에 交涉에 關한 業務에 있어서 助辦한 경험 등은 朝鮮이 必要로 하였던 그 자리에 바로 摘格했다고 主張된다.

뮐렌돌프를 雇聘하는데 있어서 提示되어진 諸條件은 淸國側에서 마련하였으며 1882年 11月 18日 道臺의 衙門에서 調印되었다. 契約文은 英文과 漢文으로 各 4通을 作成하여 1通은 朝鮮國王에게, 趙寧夏와 뮐렌돌프에게 各各 1通式 그리고 나머지 1通은 李鴻章에게 올리도록 하였으며 이 契約文은 6個條로 되었다. ⑤ 이 契約文을 分析해 보면 신중하게 뮐렌돌프의 초빙에

註 ④ vgl., Rosalie von Möllendorff, P.G. von Möllendorff Ein Lebensbied, Leipzig, 1930, S. 4~32

⑤ 契約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朝鮮政府延請前署天津德國領事官穆麟德 議立合同各條於左

- 一. 穆麟德 經朝鮮政府雇請 襄辦朝鮮與各國交涉事件 務須竭誠辦理 與朝鮮官無異 毋得稍涉瞻徇 若朝鮮政府 垂問國政應因應革之處 穆麟德須考求各國相當之事實 見諸施行者 詳陳利弊 以備採擇 其分外各事不得越俎參謀.
- 一. 朝鮮國 通商伊始 設關·收稅·泊船 種種章程 率未厘定 穆麟德會在中國海關 當差有年 務須博採中外各海關章程 隨時斟酌妥善 呈請朝鮮政府 覈奪施行 倘朝鮮政府或中國委員幫同朝鮮政府辦事之人 派穆麟德 前往何口 察看商務 以委委派各項職司 應一一遵辦 毋得藉端諉謝
- 一. 穆麟德 倘奉朝鮮政府之令 辦理海關事務 或專辦一口 或兼辦他口 務須引用朝鮮人助理 如事屬創始不得已雇訂外國人 亦須商請政府 約明雇訂年限 限內須兼教朝鮮人 熟諳關務 以便接替 限滿 即將雇訂之外國人辭退 至各海關所用之外國人·朝鮮人 其補補缺稟諸事 須一一呈請政府 覈定可否 不得自專 海關所用公費銀兩 應在稅項提出惟初時 收稅無多 暫撥他款 覈實從省挪用 俟開辦海關二年後 再行核定月支公費數日 至稅鈔銀兩 隨時 由朝鮮官解送政府 穆麟德准可稽核呈報 若朝鮮政府 委派兼辦他項職司 亦應仿照此條酌辦
- 一. 朝鮮政府 既雇請穆麟德辦事 應以禮相待 若派以職司 亦須假以應有事權 予以相當職辦 以資呼應 至俸銀 言明由朝鮮政府 暫行月給海關平銀三百兩正 其房飯川資等 暫准作正開銷 不得浮報 日後既定公費銀兩 則俸金房飯川資各項 均由朝鮮政府 於公費內 核定若干開報
- 一. 朝鮮政府 延請穆麟德 言明不拘年限 若查出該員不按以上各條辦理 即可酌給川資 隨時辭退 或彼此有情願辭退者 須先三個月 互相知會 俟接替有人 然後酌給津貼川資若干 方可辭卸.

있어서 그의 專橫可能性을 制約하고 있으며 고용하는 朝鮮側에 相當한 統制權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의 職責은 外交交渉과 稅關運營이라는 두 分野에 定하여졌으며 그가 契約의 諸條項을 준수치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를 해고할 수 있는 등 너무나 많은 制約을 받게 되는 契約이지만 뮐렌돌프는 어느 大使보다도 報酬가 좋고 아세아에 있어서 어느 大臣보다도 더 強力한 地位⁹⁾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좋아했던 것으로 보아 優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82年 11月 18日에 趙寧夏와 雇聘契約에 서명하고 朝鮮으로의 就任이 확정된 뮐렌돌프는 船便으로 同年 12月 10日에 仁川에 도착하였으며 12月 26日에는 高宗을 謁見하고 이어서 그날로 新設된 統理衙門의 參議로 任命이 되었다. 뮐렌돌프가 到着하자 곧 임시직이었던 機務處를 代身하여 統理衙門의 新發足を 보게 되었고 趙寧夏가 辦理事務 金弘集이 協辦 그리고 그 다음으로 뮐렌돌프가 參議로 된 것이다. 統理衙門의 參議는 三品職이었다. 그러나 그의 地位는 任命 一個月後에 二品官인 協辦으로 昇進하였다.

即 同年 12月 4日에 內務衙門을 統理軍國事務衙門이라고하고 外務衙門을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라고하고 다음 5月에 兩衙門의 分掌事務와 人事配置를 發表하였는바¹⁰⁾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征擢 掌交 富教 郵程의 四司를 分置하고 同協辦事務를 金弘集과 뮐렌돌프가 擔當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그에게는 穆參判이라는 호칭이 붙게 된 것이다. 그에게는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課業이 부여되었고 그 역시 열정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업무를 위하여 온 能力을 경주하였다. 뮐렌돌프와 같은 能力을 가진 사람 10인이 맡아야만할 분량의 일을 그는 혼자서 짊어지게 되었다¹¹⁾라고 主張되어진다.

2. 뮐렌돌프의 活動

뮐렌돌프가 朝鮮에 到着하여 먼저 關與하여야 했던 가장 重要한 事業은 朝鮮의 門戶開放과 急激히 來到하는 外勢에 적극적으로 對處할 수 있는 政府機構인 外務擔當機構의 創設이었다. 趙寧夏와의 오랜 熟議를 통하여 統理衙門의 創設과 編成을 決定하였다. 이어서 그가 外交部門에서 기여했던 업적을 보면 韓美修好通商條約의 체결이 1882年 5月 12日에 行하여졌고 이 結果로서 美國公使 Fute가 서울로 入京한 것은 1882年 5月 16日이었다. 그리고 이 交渉過程에 있어서 뮐렌돌프는 主要한 活動을 하였으며 심지어 外交文書는 勿論 交渉에 必要한 書類의 번역까지도 擔當하여야 했다고 主張되어진다.¹²⁾

註 一. 此次合同 在津 由兩面公司籤押後 即朝鮮大官趙寧夏 一面呈報北洋大臣存案 一面帶回 恭呈朝鮮國王批定
立合同 朝鮮大官 趙寧夏 押
前德國領事 穆麟德 押
光緒 八年 十月初八日

⑨ Rosalie von Möllendorff, a.a.O., 高柄翊譯, 穆麟德의 手記, 震檀學報, 第24號, 서울, 1963, S. 155

⑩ 高宗實錄, 朝鮮史, 壬午前, 12月 4日, 5日參照

⑪ Baron von Möllendorff, The Korea Review, Vol. 1, No. 6, 1901, S. 247

⑫ vgl., Rosalie von Möllendorff, 高柄翊譯, a.a.O., S. 167

빌렌돌프는 새로 組織된 政府에서 議政府 參贊으로서 또 統理衙門의 官吏로서 아직 政府의 事態가 어떻게 돌아갈는지 全然 예측하기 어려운 狀況과 中國人들은 日本이 곧 軍隊를 파견하여 올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이에 대한 對備를 하고있는 狀況下에서 李鴻章으로부터 電報로 全權을 받아서 서울과 濟物浦間을 래왕하면서 朝鮮, 淸國, 日本間의 調整役割을 하였으며 특히 日本使節과는 한때 仁川에서 같이 체류하면서 日本人租界의 問題를 協議했고 이 協議의 結果로서 詳細한 通商 및 關稅條約을 체결케 하였다.^㉔

淸日朝 三國關係가 심각하게 論議되어질 때 빌렌돌프의 提案으로 소위 “聯露拒淸”案이 採擇되어 그 案을 推進키위한 업무를 提案者인 빌렌돌프 스스로가 擔當하게 되었으며 漢城條約의 체결후 徐相雨를 全權大臣으로 하는 使節團의 副大臣으로 빌렌돌프는 國書를 가지고 日本으로 파견되었던 일이 있다. 이때 빌렌돌프는 그의 使命인 謝意表明만을 한 것이 아니라 極秘密裡에 駐日러시아公使 A. Davidov 및 參事官 A. Speyer와 자주 접촉하면서 帝政러시아의 世력을 導入하기위한 非常한 妥協을 展開하였다. 이와같은 事實은 後에 重大한 國際的인 과문을 야기케 되었다.^㉕ 그리고 Carl Waeber가 러시아自國政府의 命을 받아 對 朝鮮交涉의 全權大臣으로 1884年 5월에 來韓하였을時 빌렌돌프는 원하던 또는 그렇지 아니한 다른 事情에 의하여든 쉽게 Carl Waeber에게 설복당하여 러시아帝國의 對 朝鮮交涉을 쉽게 成功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빌렌돌프를 利用한 Waeber의 登場은 朝鮮으로의 帝政러시아 進出의 큰 實績이었다. 이리하여 빌렌돌프의 親露的인 傾向은 그의 祖國인 獨逸에 對한 것 以上으로 농후해 갔다고 主張되어진다.^㉖

둘째로 外交關係에 있어서 빌렌돌프는 朝鮮의 官吏로서 朝鮮國王의 命令에 따라 朝鮮을 위하여서 오직 일하여야만 했음에도 不拘하고 빌렌돌프는 첫째 그의 夫人의 手記에 의하면^㉗ 李鴻章으로부터 電報로 全權을 받아서 國際間의 調整 交涉에 임하였다고 기술했음을 인정할 때 비록 그를 선발하여 朝鮮으로 추천하여 外國人 그 누구도 占할 수 없었던 第1가는 地位를 확보할 수 있게한 李鴻章이라 하지만 全혀 常識과 도리밖의 일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또 外交問題와 더불어 빌렌돌프가 해결하여야만 했던 主要한 事業은 開港하여야 할 位置와 順位 選定 그리고 稅關의 設置問題이었다. 이미 淸國의 漢口와 九江 等地의 稅關에서 근무하였고 副領事로서 領事業務도 取扱했던 經驗이 있으리라고 추측되는 빌렌돌프로서는 確 익숙했던 業務이었지만 朝鮮의 開港問題가 非正常的인 方法과 手段에 의하여 進行되어졌고 稅關 稅收入이 급박한 政府의 財政問題의 해결을 위하여 利用되어져야 했던 事情下이지만 빌렌돌프

註 ㉔ vgl., a.a.O., S. 164

㉕ vgl., 李瑄根, a.a.O., S. 791~800

㉖ vgl., 日本外交文書, 第18卷, S. 315~316, 文書番號 168

㉗ vgl., Rosalie von Möllendorff, 高柄翹譯, a.a.O. S.164

는 日本公使 竹添과 秘密裡에 교섭하여 癸未年 9月 初8日(陽曆 10月8日)字로 日本國立第一銀行의 釜山浦支店主任 大橋半七郎와 朝鮮統理衙門 協辦 윌렌돌프의 이름으로 仁川 元山 釜山等 朝鮮各 港口의 稅關稅收稅業務를 日本國立第一銀行支店에 委託하도록 9條項의 契約을 체결한 事實은 주목하여야만 한다. 北洋大臣 李鴻章의 추천으로 淸國의 威勢를 伸張하기 위하여 來到하였던 윌렌돌프가 어느틈에 日本側과 內通 結託하여 利權去來를 敢行하였음을 알 수 있고^㉔ 러시아鍊軍教官의 과견과 保護를 要請하는 교섭이나^㉕ 러시아帝國의 對 朝鮮交涉 前後에 있어서 그의 親露의인 傾向과 그의 祖國 독일의 Zombsch 총영사가 서울에 부임한후 독일代表가 伯林으로부터의 指示가 오면 윌렌돌프와 合議한 然後에야 取扱하였다는 事實^㉖等을 綜合하여 볼때 윌렌돌프는 지나치게 多面的이며 自己 個人의 利害에 너무 민감했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세째로 開國을 위하여 朝鮮은 莫大한 資金을 必要로 했다. 稅關稅收稅를 擔保로 借入하였음은 勿論 朝鮮은 自己 힘으로서로는 도저히 이를 마련할 수 없을만한 高額의 資金이 必要하여 中國으로부터 百萬兩의 借款을 導入하기로 決定하였던 事實이 있다. 그리하여 이 目的을 위하여 朝鮮政府는 使節團을 과견하였는데 交涉通商事務衙門의 協辦으로 올라선지 10日만인 윌렌돌프와 閔寧翊이 이 使節團을 이끌고 上海로 보내졌다. 稅關創設에 關한 人員 其他의 準備를 함과 同時에 朝鮮政府는 鑛山 稅關稅收 그리고 鐵道等을 擔保로 하여 開國에 必要한 資金의 調達을 交涉케하고 있다.

借款交涉는 예상밖으로 오래 끌었고 借款의 用途에 대하여서는 嚴密한 統制가 加하여야 한다고 唐景星같은 사람은 主張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윌렌돌프夫人의 手記^㉗에도 이 交涉은 무척 어려웠음을 기록하고 있는바 이 重要한 時期에 그는 借款交涉 以外에도 여러가지 일을 併行하였음을 지적한다.

即 怡和洋行과 上海 濟物浦間의 定期航路開拓을 論議하였으며 또 이 會社와는 雙方이 다 만족할만한 條件으로 船舶의 往來 商去來 그리고 鑛權移讓이 妥結되었다. 鐵道와 電信의 架設權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찾아와 윌렌돌프는 그들과 議論하여야 했으며 이 期間中 上海 서울間의 海底電線 連結과 서울 올라디옥스間의 地上電線架設이 協約되었다. 朝鮮을 訪問하여 商易去來를 하고자하는 商人들과 접촉하였으며 朝鮮의 絹織業을 改良 發展시키기 위하여 면밀한 研究를 했고 또 직접 淸國에 있는 絹織物工場을 여러차례 視察하였다. 그리고 絹織物工業의 資材를 확보하기 위하여 10萬株의 뽕나무를 사서 朝鮮에 심게 하고^㉘ 또 더 나아가서 中國人

註 ㉔ vgl., 李瑄根, a.a.O., S. 563~4

㉕ 朝鮮交涉資料, 下卷, S. 799

㉖ vgl., Rosalie von Möllendorff, 高柄翊譯, a.a.O., S. 173

㉗ vgl., a.a.O., S. 161

㉘ A. Maetens 으로 하여금 시각케 함.

一人을 同行 歸國하여 누에고치의 집을 풀기위한 爐를 國內 各地에 設置토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森林의 改良을 위하여서도 研究하였고 朝鮮에 醫學校를 설립할 醫師도 求하려고 했다. 鑛山採掘을 위한 協定과 稅官吏들과도 契約도 맺었다. 그리고 政治的인 面에 있어서는 美國公使 Russel Young 오스트리아 總領事 von Haas 그리고 러시아領事와도 접촉하였다고 主張하고 있다. 淸國에 머물러 있는 2個月餘의 期間中 果然 이와같은 막중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萬一 手記에 기록된대로 위 事實을 全部 인정한다면 그는 平凡한 人間은 아니었다고 본다. 또 한가지 여기서 지적하여야만 할 일은 그가 使節團의 構成員으로 派淸될 때 果然 이와같은 어려운 여러 종류의 事實을 推進하도록 朝鮮國王으로 부터 허락을 받았던가라는 問題이다.

네제로는 當五錢의 鑄錢을 둘러싼 事件과 그뒤에 부수했던 非正常的인 뮐렌돌프의 人間性 問題이다. 1883年 8月 7日에는 典圖局이 設置되었으며 뮐렌돌프가 그 總辦으로 任命된 것은 1884年 3月 14日의 일이었다. 새로운 貨幣를 鑄造하기 위하여서 機械가 그에 의하여 독일로 注文되었다. 事大保守黨과 結託하에 外交 關稅 財政問題 等に 권위라고 自處하는 뮐렌돌프는 젊은 改革思想을 가진 젊은 세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反對立場을 取하였으며 特히 當五錢의 鑄造에 있어서 威臣과 結탁하여 支持한다고 나왔으며 當五錢이라는 新貨幣鑄造問題를 契機로 하여서 그는 金玉均과 正面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特히 公私席은 勿論 國王의 面前에서까지 金玉均은 當五錢의 鑄造에 대한 뮐렌돌프의 態度를 論駁하여 無色하게 만들고 끝까지 當五錢에 反對하므로써 뮐렌돌프는 威臣들 以上으로 金玉均과 그 開化黨을 미워하고 그들의 計劃이나 運動을 極力 방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金玉均이 國王의 信任을 잃지 아니하여 參百萬圓限度로 對日借款交涉에 대한 委任狀을 받아 東京을 訪問하여 앞서 日本 外務大輔 吉田淸成이 尹致昊를 通하여 주었던 通知에 따라 실지로 교섭에 임한즉 사태가 예상밖에 냉담하고 隘路가 많음을 直感할 수 있었다. 그 가장 중요한 原因이 執權黨인 威臣들은 勿論 뮐렌돌프가 駐朝鮮 日本公使 竹添進一郎를 通하여 金玉均을 모함하였다는 事實과 심지어는 金玉均이 持參 渡日한 委任狀까지도 위조라고 中傷하여 日本의 外務卿까지도 이 事實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信任했다는 것이다. ④ 其後 궁여지책으로 金玉均이 日本 第一國立銀行 頭取 澁澤榮一에게 關稅收入을 擔保로 壹・貳拾萬圓程度라도 貸與해 주기를 간청하였으나 이것 역시 뮐렌돌프가 竹添公使를 通하여 中傷하고 反對하므로 失敗할 수 밖에 없었다.

뮐렌돌프가 金玉均을 증오했던 感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大端하였으며 特히 當五錢

註 ④ Igl., 日本外交文書, 16卷 S. 315, 文書番號 121, 機密信 第107號.

問題 등으로 그에게서 面駁 當한 것을 씻고 보복하기 위함인지 뵈렌돌프는 威臣의 代表인 “朝鮮의 害毒은 當五錢이 아니고 金玉均이니 우선 그를 除去하여야 한다. 國王에게 對하여도 金玉均이 百方으로 諸君을 誣害하고 있는지라 諸君은 相互 結合하여 이나라 第1의 弊害者를 除去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까지 極言하고 있다. ④ 漢城條約의 체결후 朝鮮政府는 徐相雨를 特派全權大臣으로 그리고 뵈렌돌프를 同副大臣으로 任命하여 國書를 가지고 甲申政變의 사과를 위하여 派日되었을 때 뵈렌돌프는 그들의 使命인 謝意의 表明만을 한 것이 아니라 金玉均 등의 체포 송환을 위하여 努力하였음을 볼때 꺾 편협한 독일인의 氣質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以上에서 지적한 事實 以外에도 그는 獨系 美國人 Joseph Rosenbaum을 시켜 漢江邊 淸모래로 유리製品을 生産할 수 있도록 유리工場을 세우고 그리고 其他 社會福祉問題 등을 위하여 努力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獨善的이며 越權的인 뵈렌돌프의 對外交涉은 結局 그를 불유쾌한 存在로 看做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壬午年 11월에 李鴻章의 추천으로 이나라 外交와 稅關의 重要業務를 擔當하고 善導하기 위하여 來朝하게 되었고 事實上 그는 여러가지 인연으로 因하여 淸國세력의 朝鮮에 있어서의 代辦자라고 自他가 인정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行動도 한때 하였으나 그는 李鴻章의 信任을 저버리고 引俄拒淸의 責任者로 지목되어 파면송환하게 되었다.

뵈렌돌프는 그의 生涯의 殆半인 30餘年間을 中國과 朝鮮에서 보냈으며 特히 朝鮮에서는 1882年末로부터 1885年末까지 不過 3年間밖에 체류하지 않았지만 朝鮮의 近代化과정에서 크게 그리고 깊이 關係된, 事實上 朝鮮으로 公的으로 건너와서 居住하게된 最初의 西歐人이었다. 더욱이 그는 朝鮮政府의 高位職脚을 띄고서 朝鮮의 外交와 內政面에서 一時 重要하면서 問題된 役割을 하였을 뿐 아니라 朝鮮을 둘러싼 諸外國이 그를 非難하고 中傷하고 或은 두둔함이 類例없이 맹렬하였기 때문에 더 有名했던 것이다.

註 ④ vgl., 李瑄根, a.a.O., S. 588

Economical Rela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in the last Period of Yi-Dynasty

Kim, Kwang-soo

Summary

Representative countries, which had have a positive and direct relationship in the opening of Korea, includ China, Japan, America, and Germany. Germany lagged behind those countries which had found their way into the Far East.

Germany did not unify her country under a single government for a long time because of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disputes. She experienced the industrial revolution comparatively late and was backward as an economic state. When the Far East was introduced to Germany, desire to find her way into the Far East was very strong.

While joining some countries (i. e., U.S.A., Japan, China) which had had advantage over her, and competing with them, Germany made her position steady in the Far East with in several years thanks to her strong motivation. Prussia had sent the ship of mission to the Far East and had concluded a treaty of amity with China, Japan, and Korea before Preussen organized a unified Germany. We might conclude that this achievement is one Germany should be forever proud of. Germany sent the so-called Eulenburg Mission to Korea, composed of four ships, and led by Friedhich Albrecht Graf Zu Enlenburg among others. The Powers competed to enter the Far East via a non-normal way during the Yi Dynasty before the opening of ports.

The organization of a Mission and its being sent to the Far East, nearing Korea, concluded a commerce between Korea and Germany and tariff matters were briefly treated at that time, I have concetrsted on Möllennerff, Opert, and Zachert, who have contributed to the course of civilization in Korea. Also I have verified the differences Opert and Zachert and have focused my concern on Zachert, who entered Inchun the earliest and undertook business transaction.

Möllendorff was the first foreigner who participated in diplomatic relations and the economic and internal problems of Korea as a Government official of high rank who was

invited by the Korean government. He had studied law, languages and Oriental languages at Halle University. He worked in the field of diplomatic relations and served as Customs officer in China. He was regarded as an able man in the fields of economic diplomacy, and languages.

He came to Korea and suggested that the Korea government open the door and establish 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official system able to meet the influence of foreign countries. He took effective part in such affairs as the betterment of the monetary system for financing necessary to opening the international trade door, the reorganization of the note-issuing system, the input of casting machines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cations network, the formation of Customs regulations, the resolution of matters of tax rates and industrial development, basic social reformation. On the other hand, his positive and cooperative personality was turned to account on domestic political strife. It was said that he made use of a unauthorized Power to bring pressure upon young politicians to bring about social and political structural reforms. I shall report on Opert and Zachert in a paper.